

제2025-69호 2025년 7월 31일(목)	시  보 여수시	시 정 지 표 소통 화 합 열 린 도 시 인 재 육 성 산 업 도 시 문 화 예 술 복 지 도 시 해 양 관 광 휴 양 도 시 기 후 변 화 선 도 도 시
--	---	---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홍보담당관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입 법 예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88호 「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

공 고
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65호 여수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성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9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87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11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92호 전문건설업 폐업-유진건설주식회사 12
- 여수시 공고 제2025-2293호 시군구재산 사용료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3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공 고

「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30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여수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, 시내버스 요금 감면,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시민 대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(안 제12조) 시민 대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
5. 입법예고기간 : 2025. 7. 30. ~ 2025. 8. 18.(20일간)

6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5년 8월 18일까지
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
- 기재내용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의견
- 제출기관 : 여수시장(총무과)
 - 주 소 :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, 여수시 총무과
 - 팩 스 : 061-659-3105
 - 전자메일 : wamma@korea.kr

7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총무과(☎ 061-659-310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여주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조례 제 호

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날을 정하여 전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을 계승하고,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민의 날) 여수시민의 날(이하 “시민의 날”이라 한다)은 10월 15일로 한다. <개정 2017. 9. 29., 2025. 6. 30.>

제3조(행사) 여수시장은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. 다만,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6. 30.>

1.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
2. 시민 체육대회 행사
3. 각종 민속·문화행사
4.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

제4조(기본계획수립)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6. 30.>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시장은 제3조의 행사 추진을 위해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시 공무원
2.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3.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<개정 2025. 6. 30.>

4. 여수시장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

5.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언론인

6. 시민·사회단체, 각계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

③ 위원회 임기는 매년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민의 날 행사 정산 완료 시까지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감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

2.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3.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임원)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,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며,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1. 위원장 1인

2. 부위원장 1인

3. 실무위원장 1인

4. 감사 1인

제8조(임원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실무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수립, 회계처리 지원 등 실무차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.

④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상황, 업무추진 등을 감사한다.

제9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

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실무위원회 구성) ① 시민의 날 행사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,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실무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, 시민의 날 행사 기획·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, 회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비보상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행·재정적 지원 등) ① 제3조에 따른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위원회에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수시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
2.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·체육·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
3.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, 기념품, 홍보용품 제공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2 신·구조문 대비표

신·구조문대비표

원 안	개정안
제12조(경비의 보조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행·재정 지원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여수시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2.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·체육·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3.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, 기념품, 홍보용품 제공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. 7.31.

여 수 시 장

1. 사업시행지 위치: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산231-1번지 일원

2. 사업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 2-1553호선 개설)사업

나. 명 칭: 성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도로(소로 2-1553호선)

1) 면 적: 1,952m²

2) 규 모: L=162m, B=8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여수시장

나. 주 소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
5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예정년월일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

나. 준공예정년월일: 2027.12.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: 불임

7. 공람기간: 2025. 7.31.~ 8.14.(14일간)

8. 공람장소: 여수시 도시계획과, 도로과
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4) 및 도로과(☎061-659-299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

○ 토지조서

연번	토지 소재지	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비고
	읍	리			지적	면입	성명	주소	권리내용	성명	주소	
합 계 (16필지)					15,803	1,952						
1	돌산	금성	903	도	863	17	국(건설부)					
2	돌산	금성	117-3	도	3,443	3	국(국토교통부)					
3	돌산	금성	산231-1	도	992	410	국(국토교통부)					
4	돌산	금성	산232-1	도	501	501	윤*수	경기도 안산시 단*구 선*광장*로 1*3, *****동*****호 (선*동,군*주*아파트)				
5	돌산	금성	산232-2	임	175	175	윤*수	경기도 안산시 단*구 선*광장*로 1*3, *****동*****호 (선*동,군*주*아파트)				
6	돌산	금성	산232	임	1,228	14	윤*수	경기도 안산시 단*구 선*광장*로 1*3, *****동*****호 (선*동,군*주*아파트)				
7	돌산	금성	산231-2	도	236	236	여수시					
8	돌산	금성	산231	임	3,532	84	주*레	돌산읍 성*길 1*-1				
9	돌산	금성	산231-4	임	87	87	여수시					
10	돌산	금성	402-4	전	3	3	여수시					
11	돌산	금성	402	전	456	77	김*자	돌산읍 성*길 1*				
12	돌산	금성	402-2	도	275	144	여수시					
13	돌산	금성	산233-1	도	793	12	여수시					
14	돌산	금성	402-1	전	651	65	김*자	돌산읍 성*길 14-*				
15	돌산	금성	산233-3	임	1,884	56	김*자	돌산읍 성*길 14-*				
16	돌산	금성	196	임	684	68	국		공유지	성*새마*회	14*	
										심*환	여수시 돌*읍 돌*로 4*1-3	

여수시 공고 제2025-2287호

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
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7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연장 허가 번호	면허 번호	양식업의 종류 (양식방법)	면적 (ha)	양식장 위치	면허기간	연장허가 기 간	양 식 업 권 자		비고
							주 소	성 명	
2025-69	11659	가두리식 (가두리식)	4.3	돌산 신복	2015.09.15.- 2025.09.14. (10년)	2025.09.15.- 2030.09.14. (5년)	여수시 돌산읍 예교길 **	백*웅외8	어장환경 평가 3등급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25. 07. 30.

여 수 시 장

전문건설업 폐업 공고

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0조의2 (건설업의 폐업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30일

여 수 시 장

1. 폐업대상 업체

상 호	영업 소재지	폐업대상 건설 업종 (등록번호)	법인번호 (주민번호)	폐업일자	폐업사유
유진건설주식회사 (안*섭)	전남 여수시 성산로 35, 2층	금속·창호·지붕·건축물조립공사업 (여수2020-07-07) 기계설비·가스공사업 (여수 2010-10-08)	206211-0038204	2025.7.30.	사업포기 (면허반납)

2. 공고 기간: 2025. 7. 30. ~ 2025. 8. 13.(14일)

3. 공고 장소: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

4. 기타

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(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)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(<http://www.kiscon.net>)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시군구재산 사용료 체납액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

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22조에 따라 시군구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 체납액 고지서를 우편송달(등기우편)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여 수 시 장



1. **공고내용** : 시군구재산 사용료 체납액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2. **공고기간** : 2025. 7. 30.(수) ~ 2025. 8.19.(화) (20일간)

3. **공시송달 대상자**

성명	주소	부과대상	체납금액(원)	비고
임*규	여수시 소라면 갯실길 **	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16-6 외 1건	337,170	폐문 부재
김*곤	여수시 무선1길 **, ***동 ***호	여수시 소라면 봉두리885-7	26,030	폐문 부재
김*결	여수시 신월1길 **	여수시 신월동 112-29 외 1건	458,670	폐문 부재
강*호	여수시 소라면 죽림로**, ***동 ****호	여수시 상암동 2187-13	107,930	폐문 부재

4. **공고방법** : 시군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
5. **공시송달 내용**

- 시군구재산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용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(가상계좌)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**문의사항** : 여수시 건설과(건설행정팀) (☎061-659-4034)

2025년 7월 30일